

免訴判決事由의 範圍

Range of Cause for Dismissal Judgement

이존걸

전주대학교 법학전공

John-Girl Lee(john1992@hanmail.net)

요약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326조에 면소사유를 규정하여 소송조건이 이에 해당할 때에는 면소의 판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제한적 규정으로 볼 것인가 또는 예시적 규정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면소판결사유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찰을 할 필요성이 있다. 고찰결과 면소사유는 제326조에 규정된 사유에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소권남용 등 비전형적 소송장애사유들은 제327조 2호의 공소기각판결들을 하면 되고, 굳이 법률규정에도 없는 사항을 면소판결의 사유라고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위헌의 소지를 남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공소기각판결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일반조항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연한 해석의 길이 열려있는데 비해서 면소의 규정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26조에 규정된 사유는 어디까지나 제한규정이라고 보아 비전형적 소송조건은 면소사유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중심어 : | 면소판결 | 면소사유 | 확정판결 | 사면 |

Abstract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stipulates that dismissal cause this has to be true when the dismissal judgement. These regulations should be considered as limited by regulations or rules should be considered as exemplary is the problem. Depends on how you look at the difference in the range of dismissal judgement is encountered to. Therefore, this should be reviewed. Encountered to study the reason for the results referred to in Article 326 are valid reasons to limit. Appeals rejected the verdict abuse the rights of appeals, etc. are encountered to dismissal cause is because the restrictive rules. Therefore, the dismissal causes set forth in Article 326 as a guide only view limited because of regulatory reasons the rights of appeals encountered to abuse, etc. should not be included.

■ keyword : | Dismissal Judgement | Dismissal Cause | Final and Conclusive Judgement | Amnesty |

I. 問題의 提起

면소판결이란 피고사건에 대해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을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326조에 면소사유를 ① 확정판결이 있을 때, ②

사면이 있을 때, ③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④ 범죄 후의 범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로 규정하여 이에 해당할 때에는 면소의 판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면소판결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326조를 제한적 규정으로 볼 것인가 또는 예시적 규정으로 볼 것인가

접수번호 : #110111-003

접수일자 : 2011년 01월 11일

심사완료일 : 2011년 03월 08일

교신저자 : 이존걸, e-mail : john1992@hanmail.net

가가 문제된다. 제326조를 限定列舉規定으로 볼 것인가 例示列舉規定으로 볼 것인가에 면소판결사유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326조의 면소사유가 한정열거규정인가 例示列舉規定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제로 법정되어 있지 않은 非典型的 訴訟條件을 소송조건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고찰하여야 한다. 즉, 전형적 사유인 제326조 이외의 공소권남용, 중대한 위법수사에 의한 공소, 신속한 재판에 위배된 경우 등도 소송조건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이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비전형적 소송조건을 결여한 경우의 재판형식을 면소로 할 것인가 공소기각으로 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면소판결이 적절하다고 고려된 경우에는 제326조의 면소사유를 예시열거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가가 문제된다. 면소판결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326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免訴判決의 範圍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제326조의 규정을 制限的 規定(限定列舉規定)으로 볼 것인가 例示的 規定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면소판결의 범위가 전혀 다르다. 제한적 규정으로 볼 경우에는 제326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 사면이 있을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의 범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만 면소판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例示的 規定으로 볼 경우에는 제326조를 소송추행의 이익이 없는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이해하여 전형적 사유 이외에도 비전형적 사유인 공소권남용, 중대한 위법수사에 의한 공소, 신속한 재판에 위배된 경우 등에도 면소판결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넓어진다. 따라서 제326조의 면소판결의 사유가 제한적 규정인가 또는 예시적 규정인가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의 주장인 한정열거규정설, 예시열거설, 무죄판결설 등을 검토하고 이어서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限定列舉規定說

이 설은 형사소송법 제326조의 규정은 소추를 금지할

우월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명문으로 규정한 한정열거 규정(제한적 규정)이라는 견해이다[1]. 이에 따르면 既判力은 중대한 효력이므로 그것이 발생하는 소송조건인 흠결사유를 입법자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고, 비전형적 사유인 공소권남용, 중대한 위법수사에 의한 공소, 신속한 재판에 위배된 경우 등의 소송장애사유들은 제327조 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326조에 규정된 면소판결의 사유는 어디까지나 제한적 규정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2].

그리고 면소판결의 사유는 被告人의 人權과 國家刑罰權에 중대한 影響이 미치는 사유인 점에서 그 성질상 법의 명문으로서 확정하여 놓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동조의 사유는 열거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3]. 또한 면소사유의 규정에 대해 公訴棄却裁判의 경우와 비교하여 공소기각판결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一般條項의 性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연한 해석의 길이 열려있는데 비해서, 면소의 규정은 限定列舉規定이기 때문에 그 준용은 초범규격 또는 초학설법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고 한다[4].

III. 例示列舉規定說

이 설은 형사소송법 제326조의 규정은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면소판결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는 견해이다[5]. 이에 따르면 免訴判決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는 점에 주목하여 제326조의 전형적 소송조건 이외에도 공소권남용,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 검사의 부당한 소추행위, 신속한 재판을 해야 할 법원의 임무태만 등 아직 법률상 유형화되지 않은 소송장애사유가 존재한 때에도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6]. 즉, 제326조를 소송추행이익이 없는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송추행의 이익은 소송이라고 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형벌권에 관한 현실적 평가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면소의 사유는 제326조 각호에 규정된 것에 한하지 않고 무릇 절차조건이 완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추행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는 免訴判決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본조는 검사의 공소추행이익이 결여된 경우를 예시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7]. 이와 유사하게 형사소송법 제326조의 규정은 제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추도 허용된다는 견해도 있다[8].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에 해당하는 합정수사에 관해서도 機會提供型이야 어땠든 간에 犯意誘發型은 수사상의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실체법적으로도 당해 범죄에 대해 국가는 처벌적격을 결여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면소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한다[9].¹그러면서 제326조 열거 사유에 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범죄의 성립 자체에는 반드시 부정할 수 없지만 처벌이 상당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免訴判決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신속한 재판 위반의 경우 등에도 이러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10].²

또한 소송조건 중에 실체적 소송관계가 존속하기 위한 조건이 흠결된 경우에 신고하는 재판이 면소이므로 성립상 이에 속한 것이라면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으로 절차를 중단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오히려 형식재판으로도 절차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하여[11], 소추제량의 일탈, 불평등기소, 위법수사에 따른 기소, 기소후의 위법행위의 경우에도 免訴로 절차를 중단해야 된다고 한다[12]. 이와 더불어 면소판결은 절차사항을 이유로 하여 刑罰權不存在的의 宣告를 행하는 재판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13] 법정사유 이외에도 국가형벌권의 부존재를 초래하는 節次障害가 인정되어지면 超法規的 免訴事由를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14].

IV. 無罪判決說

이 설은 비전형적 소송조건으로 논의된 공소권남용,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 검사의 부당한 소

추행위, 신속한 재판을 해야 할 법원의 임무태만 등 아직 법률상 유형화되지 않은 소송장해사유가 존재한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견해이다[15]. 이에 의하면 사후적으로 國家의 處罰適格이 欠缺되었을 경우와 이미 행위때 부터 國家의 處罰適格이 欠缺된 경우(위법한 합정수사)를 구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우선 당해 행위는 가벌상태에 달하지 않아 범죄로서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可罰的 責任의 缺如로 무죄가 된다고 한다 [16]. 한편 위법한 합정수사에 대해서 處罰阻却事由로서 無罪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17]. 이는 소송목적 상실에 근거하여 소송장해는 오히려 실체법적 요건의 결여에 가깝고[18], 위법한 합정수사가 존재하고 국가의 헌법위반적 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형벌은 그 헌법적 기반을 잃고, 사회적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조법규칙 처벌조각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형벌권 자체가 처음부터 발생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로서 처리해야 한다고 한다[19].

V. 判例

日本の 最高裁判所는 유명한 高田사건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이며, 위 권리는 단지 신속한 재판을 일반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상 및 사법행정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요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나아가 개개의 형사사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위의 보장에 명백히 반하고, 심리의 명백한 지연의 결과 신속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권리가 피해를 받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처해야 할 구체적 규정이 없더라도 이미 당해피고인에 대한 절차의 속행을 허용하지 않고, 심리를 중단하는 비상구제수단을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이 다. 심리를 중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따라야 할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따라서 전기와 같은 심리경과를 겪은 본건에 있어서는 이 이상 실체적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므로 판결에서 면소의 선고를 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하고 있다[20].

이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판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있다. 먼저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신속한 재판에 위반한 사건에 대해 면소판결을 함으로써 例示列舉規定說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즉, 신속한 재판에 반하는 것은 기소후의 위법으로 면소로 해야 할 것으로 高田 사건 판례는 이 견해를 채용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21].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견해로 판례는 신속한 재판의 보장조항(일본헌법 제37조 1항)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를 면소사유라고 인정하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이상의 실체심리를 진행하는 것이(소송추행)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22].

그러나 이에 대해서 판례에서는 말하는 “면소판결”은 어디까지나 헌법상의 면소판결이지 형사소송법상의 면소판결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이에 의하면 판례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고 하고 있으며, 적어도 일본형사소송법 제337조(전형적 면소사유규정)를 준용하지 않는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면소판결을 이끈 절차면에 대해서 그것은 본조의 유추라고 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본 헌법 제37조(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쪼아진 법원의 法創造라고 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초실정법규적 면소의 일례를 시사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23]. 또한 高田 사건 판례는 “憲法的 免訴”를 선고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24]. 일본에서 高田 사건 이후에는 最高裁判에서 지연재판이 문제가 된 경우는 10건이 있었는데 면소된 것은 한 건도 없다[25].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326조의 4가지 면소사유와 관련된 판례는 모두 있으나, 위에서 말하는 비전형적 소송조건과 관련하여 면소판결을 한 사건은 전무하다.

VI. 結 論

지금까지 형사소송법 제326조의 면소사유가 한정열거규정인가 예시열거규정인가를 고찰하였으며, 이는 곧 법정화되어 있지 않은 非典型的 訴訟條件을 면소사유로 인정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 대체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정열거규정설에 따라 제326조

이외의 비전형적 소송조건을 면소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며, 일본의 경우는 예시열거규정설에 따라 비전형적 소송조건을 면소사유로 인정하는 경향이다. 한정열거규정설이나 예시열거규정설이나로 나누어지는 주요기준은 형소법 제326조 이외의 비전형적 소송조건을 제326조의 면소사유에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형소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기각 사유로 포함시킬 것인가이다.

例示列舉規定說은 免訴判決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는 점에 주목하여 비전형적 소송조건이 존재한 때에도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제326조 이외의 비전형적 소송조건도 면소사유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기판력은 중대한 효력이므로 그것이 발생하는 소송조건의 흠결사유를 입법자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고, 위에서 예시된 비전형적 소송장애사유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26]. 한편 無罪判決說은 제326조의 이외의 사유인 위법한 함정수사 등에 대해서 處罰適格의 缺如나 處罰阻却事由로서 無罪를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면소판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리의 결과 무죄의 심증을 얻은 경우에도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따라서 면소판결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판결내용의 법률위반)이며, 형사소송법 제326조의5 제1호에 의해 항소이유가 된다[27].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결을 하고 있다[28]. 또한 절차적 소송장애사유를 모두 형벌소멸사유에 포함시키는 것도 무리이다[29].

이를 볼 때 면소사유는 형소법 제326조에 규정된 네 가지 경우에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의 예시된 비전형적 소송장애사유들은 제327조 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판결들을 하면 되고, 굳이 법률규정에도 없는 사항을 면소판결의 사유라고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위헌의 소지를 남길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공소기각판결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일반조항

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연한 해석의 길이 열려 있는데 비해서 면소의 규정은 한정열거규정이다. 따라서 제326조에 규정된 면소판결의 사유는 어디까지나 제한적 규정이라고 보아 비전형적 소송조건은 면소사유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참 고 문 헌

- [1] 신양균, *형사소송법*, 법문사, 871면, 2009; 임동규, *형사소송법*, 제5판, 법문사, 648면, 2008; 정웅석, 백승민, *형사소송법*, 진경제1판, 대명출판사, 1110면, 2007;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748면, 2008;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제2판, 박영사, 666면, 2008; 배종대, 이상돈, *형사소송법*, 제7판, 홍문사, 654면, 2006; 이영관, *한국형사소송법*, 개정판, 나남출판, 657면, 2008.
- [2] 진계호, *형사소송법*, 제2판, 형설출판사, 671면, 2004.
- [3] 신현주, *형사소송법*, 신정2판, 박영사, 716면, 2002.
- [4] 松尾浩也, *刑事訴訟の原理*, 東京大學出版會, 273면, 1974.
- [5] 차용석, 최용성, *형사소송법*, 제2판, 세영사, 707면, 2004; 차용석, “면소의 판결”, *월간고시*, 163면, 1985. 2.
- [6] 차용석, *형사소송법*, 세영사, 954면, 1997.
- [7] 中武靖夫(平場安治/高田卓爾/中武靖夫/鈴木茂嗣共著), *注解刑事訴訟法(中)*, 全訂新版, 青林書院, 869면, 1982~1987.
- [8] 平野龍一, *刑事訴訟法*, 法律學全集, 有斐閣, 150면, 1958.
- [9] 鈴木茂嗣, *刑事訴訟法*, 改訂版, 青林書院, 63면, 1990.
- [10] 鈴木茂嗣, *刑事訴訟法*, 改訂版, 青林書院, 63면, 1990.
- [11] 井戸田侃, *刑事訴訟法要説*, 旧版合本, 有斐閣, 129면, 1993.
- [12] 井戸田侃, *刑事訴訟法要説*, 旧版合本, 有斐閣, 132면 이하, 1993.
- [13] 田口守一, *刑事訴訟法*, 第5版, 弘文堂, 413면, 2009.
- [14] 田口守一, *刑事裁判の拘束力*, 成文堂, 403면 이하, 1980.
- [15] 鈴木茂嗣, “規範的評價と可罰的評價”, 小野慶二判事退官記念論文集, *刑事裁判の現代的課題*, 19면 이하, 1998; 宇藤崇, “違法捜査と不處罰處理 12”, *法學論叢* 133卷 2号, 39면 이하, 1993.
- [16] 鈴木茂嗣, “規範的評價と可罰的評價”, 小野慶二判事退官記念論文集, *刑事裁判の現代的課題*, 19면 이하, 32면, 1998.
- [17] 宇藤崇, “違法捜査と不處罰處理 12”, *法學論叢* 133卷 2号, 39면 이하, 1993; 宇藤崇, “違法捜査と不處罰處理 12”, *法學論叢* 133卷 6号, 75면 이하, 1993.
- [18] 宇藤崇, “違法捜査と不處罰處理 12”, *法學論叢* 133卷 2号, 60면 이하, 1993.
- [19] 宇藤崇, “違法捜査と不處罰處理 12”, *法學論叢* 133卷 6号, 94면, 1993.
- [20] 日最高裁判所大法廷 判決 昭和 47・12・20. 最高裁判所刑事判例集 26卷 10号, 631면(본건은 1954년 중단되고 1969년 5월 재개된 사건으로, 제1심 검찰관입증단계에 15년여의 중단으로 방지되었던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일본최고재판소는 1972년 12월 20일에 면소판결을 하여 제1심 판결을 지지하였고, 제2심을 하기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신속한 재판의 보장에 반하는 소송을 중단하는 재판형식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경우도 있다(東京地八王子支判 昭和 37・5・16. 下級裁判所刑事裁判例集 第4卷 5-6号, 444면).
- [21] 井戸田侃, *刑事訴訟法要説*, 旧版合本, 有斐閣, 133면, 1993.
- [22] 松尾浩也 外, *條解刑事訴訟法*, 新版, 弘文堂, 757면, 1996.
- [23] 紫田孝夫(青柳文雄, 伊藤榮樹, 柏木千秋, 佐佐木

史郎, 西原春夫編), 註釋刑事訴訟法, 3卷, 立花書房, 502면, 1976~1981.

- [24] 荒木伸怡, 迅速な裁判を受ける權利, 成文堂, 232면, 1993; 岡部泰昌, “刑事手續と障碍者の人權保障上下”, 判例時報 1270号, 13면. 1274号 7면.
- [25] ① 日最高裁判所 判決 昭和 48. 7. 20. 最高裁判所刑事判例集 27卷 7号, 1322면, ② 日最高裁判所 判決 昭和 49・5・31. 判例時報 745号, 104면, ③ 日最高裁判所 判決 昭和 50・8・6. 最高裁判所刑事判例集 29卷 7号, 393면, ④ 日最高裁判所 判決 昭和 50・8・6. 判例時報 784号, 23면, ⑤ 日最高裁判所 決定 昭和 52. 4. 8. 最高裁判所判例集 刑事 203号, 517면, ⑥ 日最高裁判所 決定 昭和 53. 9. 4. 最高裁判所刑事判例集 32卷 6号, 1077면, ⑦ 日最高裁判所 決定 昭和 53. 9. 4. 最高裁判所刑事判例集 32卷 6号, 1652면, ⑧ 日最高裁判所 判決 昭和 55・2・7. 最高裁判所刑事判例集 34卷 2号, 15면, ⑨ 日最高裁判所 判決 昭和 55・7・4. 判例時報 977号, 41면, ⑩ 日最高裁判所 判決 昭和 58. 5. 27. 最高裁判所刑事判例集 37卷 4号, 474면.
- [26] 배중대, 이상돈, 형사소송법, 제7판, 홍문사, 734면, 2006;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748면, 2008; 임동규, 형사소송법, 제5판, 법문사, 611면, 2008; 신양균, 형사소송법, 법문사, 790면, 2009.
- [27]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신정2판, 박영사, 778면, 1996; 백형구,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제3판, 박영사, 209면, 2005.
- [28] 대법원 1964. 4. 28, 64도134(일반사면령(63.12.14. 각령 제1678호, 같은 달 16일부터 시행)에 의하여 사면된 공소사실(1961.1.2. 17:10에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상사실)에 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체에 관하여 심리한 후 무죄판결을 하였음은 법령적용을 그르친 적법이 있다); 대법원 1969.12.30. 선고 69도2018 판결(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그 형이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실제적 재판을 하기 전에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9.12.28. 선고 79도2391 판결; 광주고법 1977.1.20. 선고 76노604 제1형사부판결(공소시효

가 완성된후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그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거나 또는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그 실체에 들어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이 아니라 면소의 판결을 해야 한다).

- [29] 指宿信, 刑事手續打切りの研究, 日本評論社, 357면, 1995.

저자 소개

이 존 걸(John-Girl Lee)

중신회원



- 1988년 2월 : 전주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 1992년 2월 : 전주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1997년 2월 : 전주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전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 <관심분야> :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교정학